|  |  |  |
| --- | --- | --- |
|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6호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67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고 아울러 국무원의 승인을 얻었는바,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尹蔚民  2011년 9월 6일  **제1조**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란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 상주기자증> 등 취업증서와 외국인 거류증서를 취득하고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비중국 국적의 인원을 가리킨다.  **제3조** 중국 경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단위,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이하 사용단위라 함)이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은 법에 의거하여 직원 기본양로보험, 직원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및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경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경내에 등록 또는 등기한 분지기구, 대표기구(이하 경내 근무단위라 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하여 직원 기본양로보험, 직원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및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내근무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제4조** 사용단위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경외 고용주의 파견을 받고 경내 근무단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경내 근무단위에서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그의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서를 처리하는 기구는 지체 없이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현지 사회보험처리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정기적으로 관련 기구로부터 외국인의 취업증서 처리상황을 조회해야 한다.  **제5조**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한다.  규정한 양로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그 사회보험 개인계좌를 유보할 수 있으며, 다시 중국에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여 사회보험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개인계좌의 예금액을 일시불로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회보험 개인계좌의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제7조** 중국 경외에서 월별로 사회보험대우를 향유하는 외국인은 적어도 매년 1회로 그 대우 지급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이 발급한 생존증명 또는 거주국가 유관기관의 공증, 인증을 거치고 거주국가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생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직접 가서 본인의 생존상황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전 항에서 규정한 생존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사용단위 또는 경내 근무단위와 사회보험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단위 또는 경내 근무단위가 그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외국인은 사회보험 행정부문 또는 사회보험비 징수기구에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중국과 사회보험 쌍무 또는 다각적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인원이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 사회보험 가입방법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부여규칙>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사용단위 또는 근무단위가 법에 따라 채용한 외국인이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그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노동보장 감찰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와 관련 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단위가 취업증서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재중국 취업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본 방법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부여규칙  붙임: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부여규칙**  외국인이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사회보장번호는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번호, 유효증서 번호로 구성된다.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 또는 <외국인 영구거류증>이 그 유효증서이다. 소재국가 또는 지역번호와 유효증서 번호 사이에는 예비용으로 한자리를 남긴다. 그 표현형식은 아래와 같다.  XXX X XXXXXXXXXXXXXX  국가 또는 지역번호 예비용 번호 유효증서 번호  1.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번호는 “ISO3166-2006” 국가 및 지역 명칭번호의 제1 부분 국가번호 규정의 3자리 영문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독일은 DEU, 덴마크는 DNK로 한다. 국제표준이 업그레이드된 경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통일적으로 번호 업그레이드 시간을 확정한다.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번호는 그가 소지한 <외국인 영구거류증> 번호 중 제1-3위의 국가 또는 지역번호(역시 3자리)와 일치해야 한다.  2. 예비용으로 남긴 한자리는 묵인 상황에서는 0으로 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숫자 1부터 9를 기입할 수 있다.  3. 외국인의 유효여권 번호를 사용 시에는 모든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의 “.”, “-” 등 특수 부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영구거류증> 번호를 사용 시에는 그 증서번호 중 제4-15위 번호를 사용한다.  (1) 여권(번호: G01234-56)을 소지하고 중국 내 \*\*사용단위에서 근무하는 독일인을 예로 들면, 그 사회보장번호는 DEU0G0123456로 된다.  국가 또는 지역번호 예비용 번호 유효증서 번호  DEU 0 G0123456  (2) <외국인 영구거류증>(번호: DNK324578912056)소지하고 중국 내 \*\*사용단위에서 근무하는 덴마크인을 예로 들면, 그 사회보장번호는 DNK0324578912056로 된다.  국가 또는 지역번호 예비용 번호  유효증서 번호  DNK 0  324578912056  4. 데이터베이스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에 18위 자리(그중 유효여권번호는 최고 14위임)를 남겨둔다. 부여번호가 18위 미만인 경우에는 그대로 기입하고 부족부분을 보충하지 않는다.  5. 외국인 사회보장번호는 중국에서 종신토록 변하지 않는다. 증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사회보험가입 등기수속을 할 때의 사회보장번호를 유일한 식별 표식으로 하며, 사회보장처리기구는 사회보험가입인원의 증서종류, 증서번호 변경상황을 상응하게 기록해야 한다. |  |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  **社会保险暂行办法**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16号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已经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第67次部务会审议通过，并经国务院同意，现予公布，自2011年10月15日起施行。  部 长 尹蔚民  二○一一年九月六日  **第一条** 为了维护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依法参加社会保险和享受社会保险待遇的合法权益，加强社会保险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以下简称社会保险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是指依法获得《外国人就业证》、《外国专家证》、《外国常驻记者证》等就业证件和外国人居留证件，以及持有《外国人永久居留证》，在中国境内合法就业的非中国国籍的人员。  **第三条** 在中国境内依法注册或者登记的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非企业单位、基金会、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等组织（以下称用人单位）依法招用的外国人，应当依法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职工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和生育保险，由用人单位和本人按照规定缴纳社会保险费。  与境外雇主订立雇用合同后，被派遣到在中国境内注册或者登记的分支机构、代表机构（以下称境内工作单位）工作的外国人，应当依法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职工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和生育保险，由境内工作单位和本人按照规定缴纳社会保险费。  **第四条** 用人单位招用外国人的，应当自办理就业证件之日起30日内为其办理社会保险登记。  受境外雇主派遣到境内工作单位工  作的外国人，应当由境内工作单位按照前款规定为其办理社会保险登记。  依法办理外国人就业证件的机构，应当及时将外国人来华就业的相关信息通报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定期向相关机构查询外国人办理就业证件的情况。  **第五条** 参加社会保险的外国人，符合条件的，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  在达到规定的领取养老金年龄前离境的，其社会保险个人账户予以保留，再次来中国就业的，缴费年限累计计算；经本人书面申请终止社会保险关系的，也可以将其社会保险个人账户储存额一次性支付给本人。  **第六条** 外国人死亡的，其社会保险个人账户余额可以依法继承。  **第七条** 在中国境外享受按月领取社会保险待遇的外国人，应当至少每年向负责支付其待遇的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一次由中国驻外使、领馆出具的生存证明，或者由居住国有关机构公证、认证并经中国驻外使、领馆认证的生存证明。  外国人合法入境的，可以到社会保险经办机构自行证明其生存状况，不再提供前款规定的生存证明。  **第八条** 依法参加社会保险的外国人与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因社会保险发生争议的，可以依法申请调解、仲裁、提起诉讼。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侵害其社会保险权益的，外国人也可以要求社会保险行政部门或者社会保险费征收机构依法处理。  **第九条** 具有与中国签订社会保险双边或者多边协议国家国籍的人员在中国境内就业的，其参加社会保险的办法按照协议规定办理。  **第十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根据《外国人社会保障号码编制规则》，为外国人建立社会保障号码，并发放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障卡。  **第十一条** 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按照社会保险法的规定，对外国人参加社会保险的情况进行监督检查。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未依法为招用的外国人办理社会保险登记或者未依法为其缴纳社会保险费的，按照社会保险法、《劳动保障监察条例》等法律、行政法规和有关规章的规定处理。  用人单位招用未依法办理就业证件或者持有《外国人永久居留证》的外国人的，按照《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处理。  **第十二条** 本办法自2011年10月15日起施行。  附件：外国人社会保障号码编制规则  附件：  **外国人社会保障号码编制规则**  外国人参加中国社会保险，其社会保障号码由外国人所在国家或地区代码、有效证件号码组成。外国人有效证件为护照或《外国人永久居留证》。所在国家或地区代码和有效证件号码之间预留一位。其表现形式为：  XXX X XXXXXXXXXXXXXX  （国家或地区代码） （预留位） （有效证件号码）  1．外国人所在国家或地区代码按“ISO 3166-1-2006”国家及其地区的名称代码的第一部分国家代码规定的3位英文字母表示，如德国为DEU，丹麦DNK。遇国际标准升级时，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统一确定代码升级时间。  取得在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所在国家或地区代码与其所持《外国人永久居留证》号码中第1-3位的国家或地区代码一致（也为三位）。  2．预留位1位，默认情况为0，在特殊情况时，可填写数字为1至9。  3．编制使用外国人有效护照号码，应包含全部英文字母和阿拉伯数字，不包括其中的“.”、“-”等特殊字符。编制使用《外国人永久居留证》号码，为该证件号码中第4-15位号码。  （1）以在我国某用人单位工作的持护照号G01234—56的德籍人员为例，其社会保障号码为：DEU0G0123456  国家或地区代码 预留位 有效护照号码  DEU 0 G0123456  （2）以在我国某用人单位工作的持《外国人永久居留证》号DNK324578912056的丹麦籍人员为例，其社会保障号码为：DNK0324578912056  国家或地区代码 预留位  《外国人永久居留证》号码  DNK 0  324578912056  4．数据库对外国人社会保障号码预留18位长度（其中有效护照号码最多为14位）。编制号码不足18位的，不需要补足位数。  5．外国人社会保障号码在中国唯一且终身不变。其证件号码发生改变时，以初次参保登记时的社会保障号码作为唯一标识，社会保险经办机构应对参保人员的证件类型、证件号码变更情况进行相应的记录。 |